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.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 심 사 보 고 서

2005. 5.  
행정위원회

#### 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및 제출자 : 2005년 5월 4일 안주영 의원외 15인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5월 4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5월 6일

제1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#### 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안주영 의원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통장의 임기가 60세 이하의 주민중 동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위촉으로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, 이는 통장들이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구정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음.

##### 나. 주요골자

-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,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
- 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어 통장 위.해촉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, 통장으로 위촉되어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에는 해촉하도록 하고,
-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고, 통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, 단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.

##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### 3. 専門委員の 検討報告 要旨 (専門委員 김찬재)

#### ○ 본 조례 개정안은

- 통장의 위촉에 있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통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통장들이 지역실정의 정확한 파악을 가능케함으로써 동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
- 통장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어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

- 다만, 개정안 제5조 제4항 제5호중 "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"는 공무원의 정년퇴직과 맞추어 "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"로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修正案 要旨

#### 가. 수정요지

- 안 제5조제4항제5호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해촉토록 한 것을 상반기, 하반기 구분하여 해촉

#### 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5조제4항제5호의 "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"를 "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"로 수정함.

### 5. 審査結果 : 修正案 可決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(안)

의안 번호	관련 157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5.6.  
제 출 자 : 김영진 위원

### 1. 수정이유

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해촉토록 한 것을 상반기,하반기 구분하여 해촉토록 수정

### 2. 주요내용

안 제5조제4항제5호의“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”를 “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”로 함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.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.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안 제5조제4항제5호의“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”를

“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”로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.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통장의 임기)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촉) ①생략 ②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</p> <p>④생략 1.생략 2.생략 3.생략 4.생략 5.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</p>	<p>제4조(통장의 임기)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촉) ①현행과 같음 ②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<u>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현행과 같음 1.현행과 같음 2.현행과 같음 3.현행과 같음 4.현행과 같음 5.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</p> <p>6.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</p> <p>제5조의2(통장추천심의위원회) <u>등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며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</u>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부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<u>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</u> 단,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통장의 임기) 개정안과 같음</p> 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촉) ①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</p> <p>④개정안과 같음 1.개정안과 같음 2.개정안과 같음 3.개정안과 같음 4.개정안과 같음 5.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일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</p> <p>6.개정안과 같음</p> <p>제5조의2(통장추천심의위원회) 개정안과 같음</p> <p>부칙 ①(시행일) 개정안과 같음 ②(경과규정) 개정안과 같음</p>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.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5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5. 5.

발 의 자 : 안주영의원 외 15인

### 1. 개정이유

동장의 임기가 60세 이하의 주민중 동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위촉으로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, 이는 동장들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구정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음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4조 동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,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
- 나. 동에 동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어 동장 위.해촉시 동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, 동장으로 위촉되어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에는 해촉하도록 하고,
- 다.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동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고, 동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동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, 단 동장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집행부협의 : 필요치 않음(근거:청원이송건에 대한 처리결과 회시 자치행정과-4951(2005.4.27)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.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.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제4조(통장의 임기) "2년" 을 "3년"으로 한다.

나. 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.해촉)제2항중"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" 다음에 "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"를 삽입한다.

다. 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.해촉)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

라.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통장추천심의위원회) 등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며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며,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 단,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